# 조선시대 사의(射儀)용 의례기 뿔잔 치(觶)의 쓰임과 성격\*

유 효 정\*\*

### 목 차

- I. 머리말
- II. 기록에 나타난 뿔잔 치(觶)의 쓰임
- III. 벌주잔 치(鱓)의 기명적 연원과 성격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서례』의 도설(圖說)에 사기 (射器)로 실려 있는 치(鱓)라는 뿔잔의 기명적 성격과 실제적 쓰임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현전 유물이 극히 드물어 도설로만 이해되어 온 뿔잔 치와 그 받침으로 사용된 풍(豊)의 기명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조선 및 중국의 문헌기록과 영조대에 시행된 대사례에 관한 『대사례의궤』의 기록 및 대사례를 시각화한 회화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치(鱓)라는 술잔은 왕실의 활쏘기 의식에서 사용된 벌주잔, 즉 사의(射儀)용 벌작(罰酶)으로 고대 중국에서 작과 더불어 귀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주기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뿔잔 치와 받침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은 고대 중국의 활쏘기 의례에 그 연원을 두고 있고, 치와

투고일: 2022. 05. 13. 심사완료일: 2022. 06. 15. 게재확정일: 2022. 06. 2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7

<sup>\*</sup>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9S1A5C2A02081145).

<sup>\*\*</sup> 尹傚靖,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조선시대 도자 및 공예 전공. ceramuse@hanmail.net.

풍은 조선 초 『주례(周禮]』에 근거한 오례의 정비과정에서 군례 소용의 왕실의례기로 편입이 추정되었다. 또 『대사례의궤』의 기록과 <대사례도권>을 통해 치는 뿔로만든 뿔모양의 술잔이었으며, 영조 때 시행된 대사례에서는 소뿔로 만들어 흑칠한 치와 나무로 만들어 주칠한 풍을 벌주의식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뿔잔 치의 받침은 벌주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점이, 벌주의식의 과정에서는 풍이받침으로 사용되었던 사실도 확인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 벌주산(罰酒盞)으로 사용되었던 술잔 치(鱓)와 굉(觥)은 각각 사의(射儀)용 벌주잔과 연음(宴飲)용 벌주잔이라는 성격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굉은 조선 후기 축수의 상징성이 강화되면서 한수용 술잔을 대표하게 되었던 사실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명적 실체가드러난 뿔잔 치는 유교국가 조선의 왕실의례가 근간으로 삼았던 고례(古禮)가 의례기의 쓰임과 성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 뿔잔, 치(鱓), 풍(豊), 대사례(大射禮), 벌주잔(罰酒盞), 굉(觥)

# I. 머리말

뿔잔은 동물의 뿔로 만든 또는 뿔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든 잔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데, 선사와 고대 이래 동양과 서양의 여러 지역에서 옥, 금속, 나무 등 다양한 재질과 조형으로 뿔잔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중국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술잔의 이름 중에는 상(觴)·고(觚)·치(觶)·굉(觥)·각(角)과 같이 뿔과 관련된 명칭이 적지 않고, 이는 고대 주기의 연원이 뿔잔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

<sup>1)</sup> 기록상의 용례나 현전유물로 보았을 때, 뿔을 의미하는 '角'字가 포함된 명칭의 잔들이 모두 뿔로 만든 또는 뿔의 형태를 가진 뿔잔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물의 뿔을 그대로 술잔으로 사용한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쓰임이나 세부 형태의 차이에 의해 종류와 명칭이 분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도기	청자	분청자	백자
도기뿔잔, 삼국시대, 길이 19.6cm 한남대학교박물관	청자뿔잔, 고려시대 길이 25.8cm 국립중앙박물관 (동원001265)	분청상감연회문뿔잔, 조선시대, 길이 23.2cm 일본 大阪市立東洋陶磁 美術館	백자철채장식뿔잔, 조선시대, 보물 1061호, 길이 17.0cm 국립중앙박물관 (동원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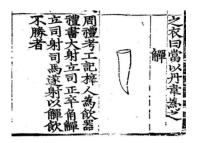
[표1]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제작된 도기와 자기 뿔잔의 예

우리나라에서도 뿔잔은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조선시대까지 오랜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도기 뿔잔이 다양한 조형으로 성행적으로 만들어졌고,2)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극히 드물지만 청자, 분청자, 백자로 자기 뿔잔이 제작되었다([표1]).3) 특히 자기 재질의 뿔잔은 우리나라에서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기에 따라 재질은 다르지만 원통형의 몸체에 바닥이 뾰족한 무소뿔[犀角]의 형태를 그대로 본뜬 단순한 조형으로 제작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보수성은 뿔잔의 쓰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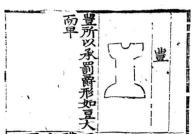
<sup>2)</sup> 삼국시대의 도기 뿔잔은 주로 신라 및 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자기 뿔잔처럼 뿔모양을 사실적으로 모방한 형태 외에 높은 굽다리를 부착하거나 동물의 형상 또는 수레바퀴 모양 등을 장식하는 등 조형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sup>3)</sup> 현재 전하는 뿔잔의 예는 모두 재질이 도자기인데, 삼국시대의 도기 뿔잔은 조형도 다양하지만 수량도 많은 반면 자기 뿔잔의 경우는 고려시대의 청자 뿔잔이 3점, 조선시대는 분청자 뿔잔 3점과 백자 뿔잔 3점이 확인되는 정도로 극소하다. 한편, 영조때 銀觶가 奎章閣에 하사된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되어 조선시대에는 자기, 골각, 금속등 다양한 재질로 뿔잔이 제작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六典條例』卷6 禮典奎章閣總例, "銀觶具臺, 用玉堂故事, 以宮中舊藏. 觶內銘曰, 日暖候靜, 可以觀德, 不中不怨, 飮此罰虧. 卽英宗朝癸亥, 大射後御題, 賜本院").

특정한 용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뿔잔이 국가의례로 시행된 군사의식에 사용된 사실이 주목된다.4)『세종실록』오례 및『국조오례의서례』에 수록된 군례(軍禮)의 활쏘기 의식에 사용된 기명을 수록한 사기도설(射器圖說)에 따르면, '치(解)'라고 지칭된 무소뿔모양의 뿔잔은 고례(古禮)를 근거로 활쏘기의 승부에서 진 사람을 위한 벌주 잔[罰爵]이며, 제기(祭器) 두(豆)와 비슷한 모양의 풍(豊)을 받침으로 함께 사용하였다(도1,2).5) 실제로 치와 풍이 중종대와 영조대에 치러진 대사례의 벌주의식에서 사용된 사실도 기록에서 확인된다.6)



도1. 『국조오례의서례』군례(軍禮) 사기도설(射器圖說)의 치(觶)



도2. 『국조오례의서례』군례(軍禮) 사기도설(射器圖說)의 풍(豊)

<sup>4)</sup>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뿔잔이 조선시대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軍禮가 등장하고 정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에(이왕무, 「조선왕실의 상무, 군례」, 『군사의례-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국립고궁박물관, 200 0, 202쪽) 도기 뿔잔이 등장하여 성행적으로 제작된 사실은 군사의식과 관련된 뿔잔의 쓰임이 삼국시대부터 연원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기록에서는 '解'가 확인되지 않아 사례용 의례기로서 '解'의 존재와 이름이 명확히 인식되고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sup>5) 『</sup>世宗實錄』卷135 五禮 軍禮 <射器圖說>, "觶,《周禮》《考工記》梓人爲飲器. 禮書 大射立司正 卒角觶 立司射司馬遂射 以觶飲不勝者"; "豐 以承罰爵 形如豆大而卑".

<sup>6) 『</sup>中宗實錄』卷77 中宗 29年 8月 16日(庚戌); 『承政院日記』957冊(탈초본 52책) 英祖 19年 閏 4月 7日(庚申).

그렇지만 활쏘기 의식에서 뿔잔을 벌주잔으로 사용되게 된 연원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뿔잔 치와 받침 풍이 사례(射禮) 의식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관련 유물이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전하는 조선시대 뿔잔의 예가 매우 희소하여 뿔잔이라는 기명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본격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7) 본고에서는 기록 자료들을 토대로 치(觶)라는 술잔의 기명적 특징과 실제적 쓰임을 고찰하여 조선시대에 왕실의례기로 사의(射儀)에 사용된 뿔잔 치(觶)의 기명적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 기록에 나타난 치의 용례와 함께 영조대에 치러진 대사례(大射禮)를 상세히 기록한 『대사례의궤』의 내용과 벌주의식을 시각화한 의궤의 <대사례도〉 및 회화자료인 <대사례도권〉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와 풍의 실제적 쓰임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고문헌의 기록을 검토하여 '치'라는 술잔의 연원과 특징을 검토하고, 아울러 조선시대에 벌주잔으로 사용되었던 또 다른 술잔 굉(觥)을 통해 '치'의 기명적 성격을 파악해보겠다.

<sup>7)</sup> 지금까지 치(解)와 같은 뿔잔과 관련된 기명을 단독적 주제로 삼은 본격적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는데, 필자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백자기명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서례』에 수록된 도설과 기록을 토대로 射禮儀와 관련된 의례용 벌주잔으로서 뿔잔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윤효정, 「조선전기 관요백자의 기명체계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07~209쪽). 군사의례 및 대사례와 관련된 연구와 전시에서도 뿔잔이 사례의식에서 벌주잔으로 사용된 사실이 간략히 언급되거나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관련 논저는 다음과 같다. 국립고궁박물관, 『군사의례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2000;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김정래, 「조선시대 궁중 활쏘기 행사와 음악」, 『한국악기학12』, 2016; 정지수, 「영조대 대사례도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정지수, 「영조대《대사례도권(大射禮圖卷)》연구」, 『미술문화연구』18, 동서미술문화학회, 2020. 그러나 대사례 및 대사례의궤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벌주의식과 관련하여 '치(解)'라는 구체적인 기명이 아닌 '벌주잔'으로만 언급되었고, 대사례의궤의 <시사 관상벌도>를 고찰한 연구에서도 치를 해(解)로 잘못 파악하기도 하였다. 신병주,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대사례의궤』」, 『한국학보』 28권1호, 일지사, 2002, 98쪽.

# II. 기록에 나타난 뿔잔 치(觶)의 쓰임

1. 사의(射儀)용 벌주잔 뿔잔 치(觶)와 받침 풍(豊)

조선시대의 기록에 나타난 뿔잔 치와 받침 풍에 관한 용례는 거의 활쏘기 의식8)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대부분이 사례의(射禮儀)를 대표하는 대사례와 관련된 것이다.9) 그 외에 투호의(投壺儀)10)에서도 치와 풍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11) 투호 역시 화살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룬 후 그 결과에 따라

<sup>8)</sup> 활쏘기는 고대 유학에서 중시하던 六禮의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왕은 물론 문무관료, 양반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습득해야 할 교양으로 국초부터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특히 사례의(射禮儀)는 고려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새로운 군사의례로 세종대에 이르러 의례화되었다.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332~333쪽.

<sup>9)</sup> 대사례는 임금이 직접 참여하는 활쏘기와 관련된 가장 기준이 되는 의례였고, 항사례와 더불어 중요한 국가의례의 하나였다. 이성곤, 「활쏘기 의례의 모범」, 『조선시대 대사례와 향사례-한국무예사료 총서XVI-』, 국립민속박물관, 2009, 11쪽. 대사례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조. 강신엽, 「조선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운영-『대사례의궤(大射禮義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6, 조선시대사학회, 2001; 신병주,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대사례의궤』」, 『한국학보』 28권1호, 일지사, 2002; 박종배, 「조선시대 成均館 大射禮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구』 13, 교육사학회, 2003;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sup>10)</sup> 투호는 연회석상에서 주인과 손님이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 승부를 겨루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여 고려 예종 때 중국의 송황제가 투호를 보낸 것을 계기로 의식이 성립되었다(『高麗史節要』卷8 睿宗 11年12月 참고). 그러나 투호의는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종대에의례화되었다. 조선 초 투호례는 궁중문화의 하나로 심신수양과 덕성함양을위한 예교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거나 종친 간의 화목을 위한 연회에서 주로 행해졌다. 세조대를 기점으로 투호례는 사대부층까지 확산되었고, 이후 왕실의 進宴, 耆英會, 耆老會 등에서도 행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육수화, 「조선시대 사대부투호례의 변화양상과 그 예교적 함의」, 『한국교육사학』 42(4), 한국교육사학회, 2020, 84~85쪽.

벌주(罰酒) 의식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례의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향촌에서 시행된 향사례(鄕射禮)12)의 벌주의식에서도 치와 풍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었다.13) 이러한 용례들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치(觶)라는 술잔은 벌주의식이 행해진 사례의식 소용의 의례기였던 것이 분명하다.

활소기와 관련된 의식에서 술잔과 받침인 치와 풍의 쓰임은 『세종실록』 오례 및 『국조오례의서례』에 수록된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와 <관사우 사단의(觀射干射壇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4) 두 의식에서 행해

<sup>11) 『</sup>成宗實錄』卷106, 成宗 10年 7月 29日(癸未); 『承政院日記』2490冊, 哲宗 卽位年 8月 7日(壬申).

<sup>12)</sup> 향사례는 원래 중국 주나라에서 鄉大夫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하기 위해 활쏘기를 시행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 속박물관, 2007), 매년 봄(3월3일), 가을(9월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수령이 孝·悌·忠·信·禮에 뛰어난 자를 초청하여 술과 음식을 베풀고 연회가 끝나면 편을 갈라 활쏘기 행사를 거행한 의식이다(『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700쪽). 조선시대의 향사례는 開城府 및 諸道의 州·府·郡·縣에서 시행되었는데, 세종대에 의례로 성립되었으나 바로 지방에서 거행되지는 못하고 성종대에 가서 전국적으로 정착되었다(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120~126쪽).

<sup>13) 『</sup>세종실록』오례나『국조오례의』향사의에는 받침 풍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世宗實錄』卷133 五禮 軍禮 鄉射儀;『國朝五禮儀』卷6 軍禮 鄉射儀). 그러나 서유구가 쓴『임원경제지』「향례지」에 수록된 향사례 중 국조오례의 군례의 향사의를 수록한國朝儀에는 풍이 없지만 1795년 정조의 명으로 작성된 新定儀에는 벌주를 마신후 치를 풍에 놓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林園經濟志』卷40 鄕禮志 鄕射禮 新定儀, "實主人僎有不勝者 則執事者實酒于觶 進授于不勝者席前 不勝者興受觶 詰西階上 北面立飲 卒觶 以觶授執事者 還尊于豊 復位". 그러나 정약용이 향사례에 관해 쓴 기록에는 의식에 규정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盞으로 觶를 대신하고, 접시[楪]로 두(豆)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丁若鏞,『茶山詩文集』卷12 江阜鄕射禮序, "設槃以爲尊 設架以爲福 設岳以爲中 張帝以爲侯 纏臂以爲拾 蔬菜以爲脯醢 乾肉以爲折俎 盞以爲觶楪以爲豆 荊以爲扑 觱栗以爲笙 奚琴以爲瑟 長聲讀以爲歌.…". 따라서 치와 풍은 국가례인 대사례에 국한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sup>14)</sup> 射于射壇儀는 왕이 참여하여 활을 쏘는 의식이고, 觀射于射壇儀는 왕이 신하들의 활쏘기를 관람하는 의식으로 각각 親射와 觀射에 해당한다. 射壇儀는 고려시대에는 시행되지 않은 의식으로 조선 초에 정착되어 의례화되었다. 이왕무. 『조선왕실의

진 벌주의 절차는 거의 차이가 없다. 즉, 활쏘기가 끝나면 병조판서가 과녁을 맞힌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써서 왕에게 아뢴 후 과녁을 맞힌 사람과 맞히지 못한 사람에게 상과 벌을 줄 것을 청한 후 먼저 과녁을 맞힌 사람들에게 상물(賞物)을 포상한 후 이어서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벌주의식이 진행되었다.

… 사준 별감(司尊別監)이 벌준(罰尊)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술잔에 술을 따라 북향하여 꿇어앉아 잔대[豐]에 두고, 물러와서 잔대의 남쪽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서면, 맞히지 못한 사람이 잔대의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술잔을 취하여 서서 술을 마시고**, 술잔을 비워서 **꿇어앉아 잔대 아래에 두고** 동향한 자리로 돌아온다. 별감(別監)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빈 술잔을 취하여 술을 따루어 두면, 맞히지 못한 사람이 차례대로 잇달아술을 마시기를 모두 처음과 같이 한다. …15)

벌주의식의 핵심은 벌준에서 술을 떠 벌주잔 치에 담아 풍 위에 두면,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풍 위에 놓인 치를 취하여 서서 술을 마시고, 다시 무릎을 꿇어 풍에 치를 두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향사례의 경우에도 중앙의 사단의식과 마찬가지로 치를 벌주잔으로 사용하고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은 서서 벌주를 마시게 되었다.16) 이러한 벌주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99~100쪽.

<sup>15) 『</sup>世宗實錄』卷135 五禮 射于射壇儀, "…司尊別監就罰尊西 東向以爵酌酒 北向跪置於豐 退立於豐南少西 不中者進豐南 北向跪取爵 立飮卒爵 跪置豐下 還向東位…"; 『世宗實錄』卷135 五禮 觀射于射壇儀, "…司尊別監就罰尊西 東向以爵酌酒 北向跪置於豐 退立於豐南少西 不中者進豐南 北向跪取爵 立飮卒爵 跪置豐下 還向東位…".

<sup>16) 『</sup>世宗實錄』卷133 五禮 軍禮 鄉射儀, "…射畢 司射命弟子 <u>設輝於酒卓 不中者取觶實之少退立卒觶 反置于卓</u> 衆實不中者 以次繼飲. 若主人及二品以上實不中 則弟子洗觶 實觶 以進 受鱓立飲…"; 『國朝五禮儀』卷6 軍禮 鄉射儀, "…射畢, 司射, 命弟子, <u>設觶於酒卓, 不中者, 取觶實之, 少退立, 卒觶, 反置于卓.</u>衆實不中者, 以次繼飲, 若主人及二品以上賓, 不中, 則弟子洗觶以進, 受觶立飲…".

절차와 내용은 고대 중국의 사례(射禮)에 그 연원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의례』에 기록된 주나라 때 시행된 대사의와 향사례 역시 "이기지 못한 자는 북쪽을 향하여 앉아 풍 위의 치를 들고 일어서서 조금 물러나 선 채로 술잰치]를 비우고 앞으로 나아가 풍 아래에 술잔을 놓고 일어서서 읍한다"17)고 하여 기본적인 벌주의 절차는 조선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조선시대 사례에서 치와 풍을 사용하여 행한 벌주의식은 주례(周禮)에 바탕을 둔 고례(古禮)를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투호의식의 경우에는 사례의식과 달리 승부에서 진 사람이 꿇어 앉아 벌주잔 치로 술을 마시게 되어 벌주를 마시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다. 활쏘기 의식과 투호 의식은 화살로 승부를 겨루고 치와 풍을 사용하여 벌주의 식을 행하는 것은 같았지만 벌주의 절차는 달랐던 것인데, 이는 두 의식이 성격적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기록을 살펴보면, 투호는 성종대에 공식화된 의식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 성격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18) 조선 초에는 활쏘기와 투호가 관덕(觀德)과 치심(治心)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중시되었지만19) 점차 투호는 공식적인 의례 보다는 비공식적인 군신간의 연회나 모임에서 즐기는 오락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던 것이다.

··· 사사(司射)가 집사자(執事者)에게 벌작(罰爵)을 행하라고 하면 집사자가 잔(禪)을 씻어 술잔을 올리고 앉아서 풍(豐) 위에 놓는다. 이기지 못한 자는

<sup>17) 『</sup>儀禮』大射儀, "不勝者進, 北面坐取豊上之輝, 興, 少退, 立卒輝, 進, 坐尊于豊下, 興, 揖"; 『儀禮』鄉射禮, "不勝者進, 北面坐取豊上之輝, 興, 少退, 立卒觶, 進, 坐尊于豊下, 興, 揖". 정현의 주에는 '선 채로 잔을 비우고 祭하지 않고 배례하지 않으니 벌을 받으면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박례경·이원택 역주, 『의례역주』 3 연례·대사의, 세창출판사, 2013, 446쪽.

<sup>18) 『</sup>世祖實錄』世祖 3年 10月 22日(壬子); 『成宗實錄』成宗 19年 3月 25日(己丑); 『燕山君日記』燕山君 12年 3月 20日(庚子); 『明宗實錄』明宗 15年 4月 10日(乙巳).

<sup>19) 『</sup>世宗實錄』卷72 世宗 18年 4月 9日(乙巳).

**풍어앉아 잔[觶]을 받들고 이긴 자도 또한 꿇어앉는다. 이기지 못한 자가 마시기를 마치면**, 사사(司射)가 말[馬]을 세우자고 청한다. ···20)

## 2. 『대사례의궤』와 <대사례도>를 통해 본 치(觶)와 풍(豊)

대사례는 국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행하는 의식으로 세종대에 국가의 례로 성립되어 성종대에 처음 거행되었으며,<sup>21)</sup> 연산군대와 중종대에 연이어 시행된 후<sup>22)</sup> 중단되었다가 영조대에 다시 부활되었다. 영조 19년(1743) 윤4월7일에 성균관에서 거행한 대사례를 기록한 것이 바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대사례의궤』이다.<sup>23)</sup> 당시의 대사례는 200여년 만에 다시 치러지게 된 왕실의 행사였던 만큼 절차 및 소용 기물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의궤에는 그 전모가 담겨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벌주의식과 소용기 명인 술잔 치와 받침 풍에 관한 내용들이 확인되고, 의궤의 맨 앞에 수록된 <대사례도〉에는 대사례의 주요 장면으로 벌주의식이 사실적으로 시각화되어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대사례의궤』의 기록과 <대사례도〉를 통해 기록에 나타난 치와 풍을 사용한 사례와 결부된 벌주의식의 실제를 살펴볼 수

<sup>20) 『</sup>成宗實錄』卷106 成宗 10年 7月 29日(癸未), "···又司射 命執事者 行罰爵 執事者 洗觶 陸酌 坐而置於豐上 不勝者跪取觶 勝者亦跪 不勝者飮訖 司射 請立馬···".

<sup>21) 『</sup>成宗實錄』 成宗 8年 8月 3日(丁酉)

<sup>22) 『</sup>燕山君日記』 燕山君 8年 3月 1日(癸酉); 『燕山君日記』 燕山君 11年 9月 13日(甲午); 『中宗實錄』 中宗29年 8月 16日(庚戌).

<sup>23) 『</sup>대사례의궤』는 1743년 윤4월17일 영조의 명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윤4월 22일의 儀軌事目에 의하면 御覽儀軌 1건과 史庫, 의정부, 예조, 성균관에 나누어 보관할 分上儀軌 4건, 총 5건이 제작되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대사례의궤』는 책의 표지에 '議政府上'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의정부에서 보관한 분상용 의궤로 추정된다. 이성곤, 「활쏘기 의례의 모범」, 『조선시대 대사례와 향사례-한국무예사료 총서XVI-』, 국립민속박물관, 2009, 11~12쪽.

있다.

『대사례의궤』는 대사례의 주요 장면을 그린 대사례도(大射禮圖)와 그 설명인 대사례도해(大射禮圖解), 의례의 준비과정을 기록한 계사질 (啓辭秩)-의주질(儀註秩)-이문질(移文秩)-감결질(甘結秩), 의식에 사용된 물품을 상세정보와 그림으로 정리한 물목질(物目秩), 그리고 예문 관제학 원경하(元景夏)가 쓴 대사례기(大射禮記)와 발문(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치와 풍에 관한



도3. 『대사례의궤』 품목질(稟目秩) 대사례소용제구(大射禮時所用諸具)

내용은 왕과 신하들의 논의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계사질(啓辭秩)과 의례의 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관청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를 기록한 이문질(移文 秩)과 감결질(甘結秩)에서 주로 확인된다.<sup>24)</sup> 또 품목질(稟目秩)에는 대사례에 실제 사용된 치와 풍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도3), <대사례도>에는 치와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도4).

계사질과 이문질 및 감결질의 기록 중 치와 풍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2]참고). 첫째, 대사례에 쓸 기명 중 술잔인 치와 받침 풍은 옛 제도[古制]를 따르도록 했고,<sup>25)</sup> 『주례』의 「고공기(考工記)」를 근거로 삼은 오례의를 참고하여 공조에서 제작하도록 했다.<sup>26)</sup> 둘째, 대사례

<sup>24)</sup> 이문질에는 대사례 시행과 관련된 병조, 예조, 공조에서 시행할 일에 관한 공문이 실려 있고, 감결질은 대부분 대사례를 주관한 병조에 보내는 감결로 병조에서 예하 부서에 지시한 사항이 실려 있다. 신병주,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대사례의궤』, 『한국학보』 28권 1호, 일지사, 2002, 73쪽.

<sup>25) 『</sup>大射禮儀軌』 啓辭秩, 癸亥(1743) 3월 28일; 『大射禮儀軌』 移文秩, 癸亥(1743) 4월 2일.

에서 벌주잔으로 사용한 치는 '뿔로 만든 뿔모양의 술잔'이었고<sup>27)</sup> 받침인 풍은 제기 두(豆)와 체양과 크기가 같았으나 높이가 약간 낮고, 바닥이 뾰족한 치를 안전하게 놓기 위해 윗부분을 약간 오목한 형태로 만들었다.<sup>28)</sup> 셋째, 실제 대사례에 사용한 치는 소뿔로 만들어 흑칠하였고, 풍은 괴목으로 만들어 당주홍칠을 하였다.<sup>29)</sup> 넷째, 벌주잔의 경우 치 대신 작(爵)을 사용하려 했지만 제향용 기명이므로 작 대신 백자 술잔[沙鍾]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영조의 명으로 오례의를 따라 치를 사용하게 되었다.<sup>30)</sup> 다섯째, 대사례에 사용된 치와 풍을 비롯한 기물들은 원래 군기시(軍器寺)에 보관되었으나 영조 19년 대사례에 사용된 치와 풍을 포함한 기물들은 성균관에 3칸의 건물을 추가로 지어 보관하도록 하였다.<sup>31)</sup>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영조대의 대사례에 사용된 벌주기명 치와 풍은 철저하게 고례를 토대로한 오례의의 규범을 준수하여 제작되고 사용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표2] 『대사례의궤』의 벌주기명 치와 풍에 관한 주요 기록

항목	일시	내용		
계 사 질	1743년 3월28일	임금께서 "주서가 가서 오례의도권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였다. 주서 윤천각이 오례의도권과 대명집례를 가지고 들어왔고 응후, 깎지, 팔찌, 술잔과 술잔 받침[輝豊], 화살막이, 화살걸이 등의 제도를 살피었다오광운이 말하기를 " <b>술잔과 술잔 받침[輝</b> <b>豊], 화살막이, 화살걸이 등은 옛 제도 그대로 따르고</b> , 깍지와 팔찌는 실제 쓰는 것에 따라 활쏘기에 편하게 하며 옛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임금께서 옳다고 하였다.		

<sup>26) 『</sup>大射禮儀軌』 啓辭秩, 癸亥(1743) 3월 28일.

<sup>27) 『</sup>大射禮儀軌』 啓辭秩, 癸亥(1743) 3월 28일.

<sup>28) 『</sup>大射禮儀軌』 移文秩, 癸亥(1743) 4월 2일.

<sup>29)『</sup>大射禮儀軌』稟目秩.

<sup>30) 『</sup>大射禮儀軌』 啓辭秩, 癸亥(1743) 4월 12일; 『大射禮儀軌』 移文秩, 癸亥(1743) 4월 2일.

<sup>31) 『</sup>大射禮儀軌』 啓辭秩, 癸亥(1743) 윤 4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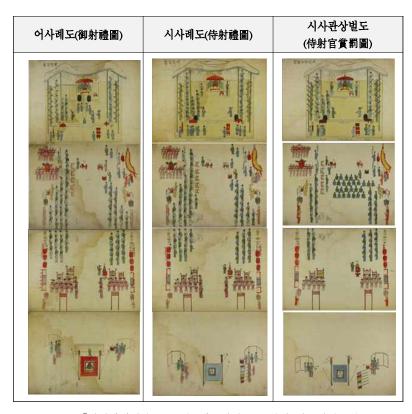
		上曰注書出去五禮儀圖卷持來可也. 注書尹天覺持入五禮儀圖卷
		及大明集禮 考出熊侯決拾觶豊乏福等制度 …吳光運曰觶豊乏福
		等物當一依古制 而決拾當以行用便射之制不必拘拘泥古制矣.
		임금께서 '치의 형태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오광운이 말하기
		를 " <b>뿔의 형태이며 뿔로 만듭니다</b> "라고 하였다. 영조가 말하기를
		"궐 안에 뿔로 만든 술잔이 있었는데 어떤 물건인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치였구나"라고 하였다.
		上曰觶形何如 吳光運曰角形而以角爲之矣 上曰闕中有以角爲爵
		者 不識其何物 今始覺之此必觶也.
		오광운이 말하기를 "사례에 필요한 기물을 만들어 바치는 일은
		미리 각각의 해당 관청에 분부하셔야 합니다. 술잔 받침과 술잔
		은 주례 속고공기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考工은 지금의 工曹입니
		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용의 깎지와 팔찌
		는 상의원에서 만들어 바치고 <b>풍치점작은 공조에서 만들어</b>
		바치며, 그밖에 활쏘는 기구는 군기시에 명하여 만들어 바치게
		하라"고 하였다.
		吳光運曰 所入器用製進事當預爲分付於各該司 豊觶考周禮屬考
		工記 考工卽今之工曹也. 上曰 御用決拾尙方製進 豊觶坫工曹製進
		其他射具令軍器寺製進可也.
		정석오가 또 아뢰기를 "시사관 가운데 <b>과녁을 맞히지 못한 자에</b>
		게 벌주를 내릴 때 치 대신 작을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작(爵)은 제향에 쓰는 그릇이라 미안하므로 사기잔[沙鍾]으로
		대신하고 술항아리[奪]도 또한 사기항아리[沙奪]를 쓰는 것이
	4= (01 =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께서 말씀하기를 " <b>술잔은 오례의를</b>
	1743년 4월12일	따라 치(觶)를 쓰고. 잔대[坫]는 나무로 만들어 주칠을 하며,
	4 년 12 년	<b>술동이는 사기항아리[沙尊]를 쓰라</b> "고 하였다.
		又所啓侍射官不中者罰酒時 以爵代觶事命下 而爵是祭享所用之
		器 似爲未安以沙鍾代用 而尊亦以沙尊用之何如 上曰爵則依五禮
		儀用觶 坫則以木爲之而加朱漆 尊則用沙尊可也.
		대사례를 마친 후 무과 시험을 볼 때 임금께서 "활쏘기를 쏜
		기구들은 어디에 두었는가"라고 물었다. 병조판서 서종옥이
	1743년	말하기를 "군기시에서 준비하여 군기시에 두었습니다."라고
	윤4월7일	하였다임금께서 "성균관에 보관할 곳이 있느나"고 물었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보관할 곳이 없으면 몇 칸의 건물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사례에 쓰인 것이니
		<u> </u>

		武庫에 두는 것이 옳지 않으며 성균관에 두어 후세에 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라고 하였다[윤4월10일의 전강에
		서 병조와 호조에서 물력을 대어 3칸의 건물을 성균관에 짓고
		대사례에 쓰인 기구들을 보관하라고 결정하여 명하였다]
		上曰御射所入諸具置於何處耶 兵曹判書徐宗玉曰 旣已自軍器寺
		造備置之軍器寺乎上曰泮宮有可藏置處耶 徐宗玉曰若無可藏
		之處則雖建數間屋子亦非難事 而此是禮射所用則不當置諸武庫
		藏留泮宮以爲專後之地似宜矣. 上曰與大司成相議爲之可也. 同月
		初十日殿講入侍時以兵戶曹物力屋子三間造成于泮宮藏置諸具
		事定奪.
		…지난 3월 28일에 술잔 받침과 술잔을 공조에서 만들어 바치고
		이를 절목에 넣으라는 하교가 있었다. 그 후 29일에 입시하였을
		때, 다시 하교하시기를 술잔, 잔대, 술동이 술잔 받침을 공조에서
		만들어 바치게 하고 <b>치를 작으로 바꾸라고 하셨다.</b> … 술잔 받침
		[豊]과 술잔[解]의 체양은 오례의 서례가 실린 책이 있으니 즉시
		참고하여 그 모양에 따라 만들라. 오례의에 그려진 술잔 받침은
		술잔을 올려 놓게 되어 있다. 따라서 술잔 받침의 윗면은 조금
		오목하게 하여 치 하단의 뾰족한 부분이 편안하게 올려질 수
		<b>있도록 하였는데</b> , 이번에 작으로 바꾸었으니 작은 다리가 세
		개 이므로 술잔 받침의 윗면에 세 개의 오목한 자리를 만들어
	1743년	작을 편안하게 올려질 수 있게 하라. 길이와 너비는 오례의의
이	4월2일	그림에 있는 두와 같이 하고 조금 낮게 하라. 제향에 쓰이는
문		두의 모양을 살펴서 풍의 체양으로 하되 두에 비해 조금 낮게
질	예조에	하라. 술잔 받침의 숫자는 한 개만 쓰지만 예비로 두 개를 준비하
	보낸 이문	라, 작은 놋쇠로 만들어야 하니 상고하여 사행하라. [4월12일에
		입시하였을 때 작은 오례의에 따라 치를 쓰고 잔대는 나무로
		만들되 주칠을 하며, 술동이는 사기로 만든 술동이를 쓰라고
		전하께서 정하셨다.]
		…去三月二十八日下教 豊觶等物自工曹造進事添入節目 而其後
		二十九日入侍時改下教 爵坫尊豊令工曹造進則旣已代觶以爵 …
		豊爵體樣在於五禮儀序例卷卽爲考出依其形造作 而五禮儀所圖
		豊體則爲奠觶故豊之上面小凹以安合於觶之下端尖體 而今則代
		用以爵爵則三足豊之上面 當設三凹以安爵體是遣 豊則以木爲之
		而不可用白體似當用黑漆 而其長廣則五禮圖如豆而卑 當考祭享
		所用豆樣以爲豊體而較豆少卑爲當是遣數則只用一箇準備實預

		兩件亦無不可是旀爵則鍮鑄宜當相考施行向事[四月十二日入侍
		時爵則依五禮儀用觶坫則以木爲之加朱漆奪則用沙奪事改定奪]
71		하나, 이번 대사례를 하실 때 시사관 가운데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에게 벌주를 내릴 때 치를 쓰면 풍의 윗면에 세 개의
	1743년	오목한 곳이 필요 없으니 모두 예문에 따라 만들라. 칠은 잔대[坫]
감	4월13일	의 예에 따라 모두 주칠을 하라.
결	병조에서	一今此大射禮教是時 侍射官不中人員罰酒旣用觶則豊上不必有
질	보낸감결	三四 一依禮文造作 漆則依坫例一體朱漆爲旀 今日筵中本曹堂上
		親承傳敎內 罰酒時酌酒耳只 不以祭享時所用用之 別造他耳只一
		件用之事 定奪爲有置急速擧行事[工曹 司饔院 通禮院]

한편, 의궤의 맨 앞에 실려 있는 <대사례도>는 대사례의 핵심이 된 활소기의 세 의식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인데, 왕의 활소기 장면인 어사례도(御射禮圖), 짝을 이뤄 진행된 신하들의 활소기 장면인 시사례도(侍射禮圖), 활소기후 시행된 상벌 장면을 그린 시사관상벌도(侍射官賞罰圖)의 세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도4).32)

<sup>32)</sup> 의궤의 <대사례도>는 어사례도-시사례도-시사관상벌도가 각 4면씩 총 12면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4. 『대사례의궤』(奎1494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 중 <시사관상별도>의 왼쪽 상단에는 벌준탁을 앞에 두고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이 서서 뿔잔 치로 벌주를 마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도5), 이것은 앞서 살펴본『세종실록』오례 및『국조오례의』사단의에 기록된 벌주의식의 내용과 부합된다.33) 또 의궤 의주질에 기록된 대사례의식[大射 禮儀]에도 "사용원 관원이 (벌준에서 술을 떠) 치(鱓)에 술을 담아 북향하고

<sup>33)</sup> 앞의 주15).

무릎을 꿇어 풍(豊)에 놓고 물러나 풍의 남쪽에서 조금 서쪽으로 서면, 과녁을 맞히지 못한 사람이 풍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어 치를 들고 서서 마시며, 다 마신 마음에는 무릎을 꿇고 치를 풍 아래에 놓고 동향하여 자리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 실제의 벌주의식을 충실히 재현한 것을 알수 있다. 다만 부가된 주에 의하면, 그림에는 양손으로 치를 들고 마시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의식에서는 왼손에 활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치를 잡고 벌주를 마시게 되었다.34)



도5 『대사례의궤』(奎14941) <시사관상벌도>의 세부



도6 『대사례의궤』(奎14941) <어사례도>의 세부

벌주를 마시는 사람의 위쪽으로는 사용원 관원이 술 뜨는 국재鍮耳,이를 들고 벌준탁 앞에 서 있고, 벌준탁 위에는 벌준(罰樽)인 백자항아리와 주칠한점(坫)이, 벌준탁의 서쪽 아래에는 풍(豊)이 놓여 있다(도5). 그런데 벌주잔치의 받침인 풍 외에 작(虧)의 받침으로 사용되는 점(坫)이 벌준과 함께 그려

<sup>34) 『</sup>大射禮儀軌』 儀註秩,"…司饔院官就罰尊西東向以觶酌酒北向跪置於豊 退立於豊南少西 不中者進豊南北向跪取觶立飮卒觶跪置豊下還東向位 [飮罰時右手執觶左手執弓此段添入笏記]…".

진 점이 주목된다(도6). <어사례도>의 벌준탁에는 흑칠한 뿔잔 치가 주칠한점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의주질 대사례의식에도 "잔대[出]를놓고 술잔[觶]을 얹어 놓으며 술잔 받침[豊]을 탁자의 서쪽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벌주의식이 행해지기 전에는 술잔 치를점에 받쳐 놓았다가 벌주의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풍을 받침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풍이라는 받침은 벌주의식에서 벌주용 술잔인 뿔잔치를 받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성격을 가진 기명이었던 것이다.35)



도7. 대사례도권(大射禮圖), 1743(영조19) 비단에 채색, 58.7X257.6cm, 국립중앙박물관



도8. 대사례도(大射禮圖), 1743(영조19) 비단에 채색, 60.0X282cm. 고려대학교박물관

<sup>35) 『</sup>儀禮』 大射儀에 의하면 활쏘기에 앞서 열린 연회에서도 豊이 사용되었는데, 정현의 주에는 풍은 술동이[尊]을 받친다고 되어 있다(『儀禮』 大射儀, "豊, 以承尊也". 박례 경·이원택 역주, 『의례역주』 3 연례·대사의, 세창출판사, 2013, 271~272쪽). 그러나 활쏘기 의식에서는 豊이 射器로 사용되었고, 정현은 주에서 풍은 사작[射爵], 즉치(觶)를 놓는 것이라고 하였다(『儀禮』 大射儀, "豊, 可尊射虧者". 박례경·이원택 역주, 『의례역주』 3 연례·대사의, 세창출판사, 2013, 364~365쪽).



도9. 대사례도(大射禮圖), 1743(영조19), 비단에 채색, 59.3X263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도10. 대사례도(大射禮圖), 1743(영조19), 비단에 채색, 60X259cm. 연세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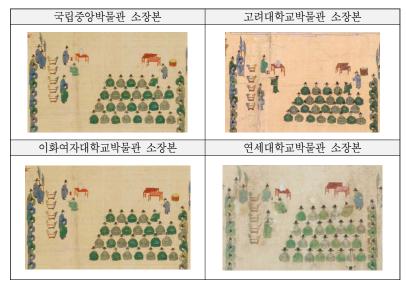
한편, 영조대에 치러진 대사례의 모습은 의궤의 <대사례도> 외에 <대사례 도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사례도권>은 신하들의 발의로 제작된 사적인 성격의 그림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에 4개의 이본(異本)이 각각 소장되어 있다(도 7,8,9,10). 의궤의 대사례도와 마찬가지로 어사례도-시사례도-상벌도의 세장면을 그린 것으로 임금의 어사(御射)와 시사자(侍射者)들의 활쏘기 성적을 기록한 좌목(座目)과 병조판서 서종옥(徐宗玉,1688~1745)이 작성한 대사례도서(大射禮圖序)가 부가되어 있다.36)

네 이본의 그림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대사례 장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벌주의식을 그린 상벌도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표3]). 고려대학 교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의궤와 동일하게 서서 뿔잔으로 벌주를 마시는

<sup>36)</sup> 정지수, 「영조대 ≪대사례도권(大射禮圖卷)≫ 연구」, 『미술문화연구』 18, 동서미술 문화학회, 2020, 170쪽.

모습인 반면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모두 꿇어앉아 벌주를 마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또 벌준탁 부분도 의궤와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에는 주칠한 점이 그려져 있지만 나머지세 이본에는 백자인 잔과 잔 받침이 그려진 차이도 확인된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다른 이본들과 달리 벌주를 마시는 사람이 들고있는 것이 뿔잔이 아니고 유기로 추정되는 잔과 받침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벌준탁 옆에 풍도 보이지 않는다.37)

[표3] <대사례도권>의 상벌도(賞罰圖) 장면



<sup>37) &</sup>lt;어사례도>에는 풍이 그려져 있어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지수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왼쪽 동재의 담장과 대사례를 위해 쳐둔 흰색 장막들이 겹쳐져서 표현된 점을 지적하며 회화적 실수가 있다고 보았다. 정지수, 위의 논문(2020), 63쪽.

의궤와 <대사례도권>의 이본들에 그려진 벌주장면을 비교해보면([표4]), 의궤의 경우 술을 뜬 국자를 들고 서 있는 사용원 관원의 모습이나 검은색으로 흑칠한 치를 표현하는 등 기록과 거의 부합하는 사실적 표현이 두드러진 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의궤에 그려진 <대사례도>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나머지 세 이본들은 벌주를 마시는 모습이나 기물의 묘사 등에서 의궤의 그림 및 기록의 내용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표4] 대사례의궤와 <대사례도권>의 벌주 장면 비교

	대사례의궤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소장본	소장본	소장본
벌주 장면					
벌주 잔과 받침	치(觶)와 풍(豊)	치(觶)와 풍(豊)	치(觶)와 풍(豊)	잔과 잔대	치(觶)와 풍(豊)
자세	입음(立飮)	입음(立飮)	좌음(坐飮))	좌음(坐飮)	좌음(坐飮)
벌준 탁	사준(沙尊) 점(坫)	사준(沙尊) 점(坫)	사준(沙尊) 사종(沙鍾) 잔 받침[臺]	사준(沙尊) 사종(沙鍾) 잔 받침[臺]	사준(沙尊) 사종(沙鍾) 잔 받침[臺]
기타	국자 [鍮耳只]	×	×	×	×

상벌도의 벌주장면은 공적으로 제작된 의궤의 <대사례도>와 사적으로 제작된 <대사례도권>의 성격적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례나 대사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는 벌주의식 자체나 소용 기명을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아 이러한 차이점들은

간과되었다.38) <대사례도권>에 대한 연구에서는 벌주를 마시는 자세의 차이를 지적하였지만 그것은 의례의 설행 과정에서의 시점적 차이라고 보면서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벌주를 마시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세 이본들은 벌주를 마신 다음의 상황이라고 해석하였다.39) 그러나 상벌도에 그려진 벌주장면의 핵심은 바로 벌주를 마시는 모습이며, 벌주장면에 대한 묘사는 벌주의식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용 기물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림에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또 <대사례도권>의 발주자가 대사례에 직접 참석했는지의 여부나 신분적 위치와 결부된 의식에의 참여도등에 따라 벌주를 마시는 장면이 달리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대사례도권>이 실제의 의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지표이며, 따라서 회화적인 양식 뿐 아니라 의식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의식의 소용 기명까지도 중요한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III. 벌주잔 치(鱓)의 기명적 연원과 성격

# 1. 고문헌에 기록된 술잔 치(觶)

조선시대 사례의 벌주의식에 사용된 뿔잔 치는 중국에서 고대부터 사용된 술잔의 하나였는데, 중국 고문헌의 기록을 통해 벌주잔으로서의 유래와 주기로서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세종실록』오례와『국조오례의서례』「사기도설」의 치에 대한 설명에는 "예서(禮書)에 대사(大射)에 사정(司正)을 세워 뿔술잔(角觶]를 비우게

<sup>38)</sup> 앞의 각주7) 참조.

<sup>39)</sup> 정지수, 위의 논문(2018), 62~73쪽.

하고, 사사(司射)와 사마(司馬)를 세워 활쏘기를 하도록 하여 술잔[觶]로써이기지 못한 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고 하여40) 벌주잔 치와 고례(古禮)와의 관련성이 언급되어 있다. 주나라 때의 예법을 기록한 『의례』의 기록을 통해고대부터 활쏘기 의식에서 치와 풍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사의 (大射儀)와41) 향사례(鄕射禮)의 벌주를 마시는 절차에는 술잔 치와 받침 풍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42) 또 후한의 허신(許慎, 30~124)이 편찬한 자전인 『설문해자』에도 "觶, 鄕飮酒角也"라 하여 치가 향음주례에 사용된 뿔잔이라고 되어 있다.43) 따라서 뿔잔 치와 받침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은 고대 중국에서 행해진 사례의식에 그 연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치가 중국에서 고대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술잔의 하나였던 사실과 함께 주기로서의 특징과 성격을 고문헌의 기록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전한 (前漢)의 한영(韓嬰)이 쓴 한시(韓詩)<sup>44)</sup>에는 술잔의 종류와 크기 및 의미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한시(韓詩)에서 말하기를, 한 되들이를 爵이라 하니, 작은 다함이고 충분함이다. 두 되들이를 觚라고 하니, 고는 적음이니 적게 마셔야 하는 것이다. 서 되들이를 觶라고 하니, 치는 적당함이니 스스로 적당하게 마셔야 하는 것이다. 너 되들이를 角이라고 하니, 각은 저촉됨이니 스스로 적당하게 마시지 않으면 罪過에 저촉되는 것이다. 닷 되들이를 散이라고 하니, 산은 비난이니 스스로 절제하여 마시지 않으면 남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다. 술잔에

<sup>40)</sup> 앞의 주5) 참고.

<sup>41)</sup> 앞의 주17) 참고.

<sup>42) 『</sup>儀禮』 鄕射禮, "胜者之弟子 洗觯升酌 南面坐 奠于豐上". 박례경·이원택 역주, 『의례 역주』 2 향음주례·향사례. 세창출판사, 2013, 271~272쪽.

<sup>43) 『</sup>說文解字』 角部.

<sup>44)</sup> 漢代까지 《詩經》은 齊 轅固生의 齊詩, 燕 韓嬰의 韓詩, 魯 申培公의 魯詩와 毛亨의 毛詩의 4가지 종류가 전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毛亨이 쓴 毛詩만 전하고, 前漢의 학자 韓嬰이 쓴 漢詩는 內傳은 유실되고 남송 이후 外傳만 전한다.

대한 총칭은 爵이나 실제는 觴이니, 상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觥도 닷 되들이이니,** 不敬**함을 벌하기 위한 것이다. 광은 분명함이니 환하게 드러난 모습이니**, 군자는 과실이 있으면 환하게 드러나므로 벌주를 굳이 먹여야 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觴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다."<sup>45)</sup>

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대에 치(觶)는 서되들이[三升]의 술잔으로 용량이 작(爵)이나 고(觚) 보다는 크고 각(角)과 산(散) 또는 굉(觥) 보다는 작은 술잔이 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치는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것은 치의 용량이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중간 정도였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 『예기(禮記)』의 예기(禮器)에 기록된 "종묘의 제사에 귀한 자에게는 작(爵)으로 올리고, 천한 자에게는 산(散)으로 올리며, 높은 자는 치(觶)를 들고 낮은 자는 각(角)을 든다"는 내용을 통해<sup>46)</sup> 고대에 작과 치는 존귀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술잔으로 높은 위계를 가진 주기였음을 알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벌주잔 치가 사용된 사례의식나 투호의식에 대한 기록에서 치대신 벌작(罰爵)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실이 주목된다.<sup>47)</sup> 조선시대에 벌주는 공식적의례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술자리에서도 행해졌는데, 그 경우에는 벌주잔이 벌작이 아닌 벌배(罰杯 또는 罰盃)라고지칭되었다.<sup>48)</sup> 즉, 벌작은 활쏘기 의식에서 의례기로 사용된 치를 지칭한

<sup>45) 『</sup>論語註疏』雍也 第六,"子曰觚不觚 觚哉觚哉"【疏】"…韓詩爲 一升曰爵 爵 盡也足也.二升曰觚 觚 寡也 飮當寡少 三升曰觶 觶 適也 飮當自適也.四升曰角 角 觸也.不能自適 觸罪過也.五升曰散 散 訕也. 飮不自節 爲人謗訕 摠名曰爵 其實曰觴 觴者餉也. 觥亦五升 所以罰不敬 觥 廓也 所以著明之貌 君子有過 廓然著明 非所以餉 不得名觴…"。"(影印)文淵閣四庫全書』第195冊 經部189 四書類(臺灣商務印書館, 1983), 583~584至.

<sup>46) 『</sup>禮記』禮器, "宗庙之祭 貴者献于爵 賤者献于散 尊者舉觯 卑者舉角".

<sup>47) 『</sup>世宗實錄』 卷135 五禮 軍禮 <射器圖說> 解: 『成宗實錄』 卷106, 成宗 10年 7月 29日(癸未).

별칭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작과 함께 존귀한 자가 쓸 수 있는 주기였던 치의 특별한 성격과 인식이 전해져 조선시대에도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치라는 뿔잔은 조선시대에 국가의례에서 핵심이 된 제향 및 연향에 사용된 주기를 대표하는 작과 더불어 높은 기명적 위상을 가진 술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사례에서 벌주의식이 시행되기 전에 작의 받침으로 사용했던 점에 치를 얹어서 배설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9)

## 2. 치(鱓)와 또 다른 벌주잔 굉(觥)

벌주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광'이라는 또 다른 술잔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용례를 살펴보면 벌주잔으로 사용된 치와 광은 쓰임이나 성격에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활쏘기나 투호와 같은 공식적 성격의 사례의식에서 사용된 치와 달리 광은 사례와 관련된 용례도 없지는 않지만50) 군신간의 술자리나 왕실의 연회 등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된 경우가 더 많다. 특히그러한 용례에는 '거광(巨觥)'이나 '대광(大觥)'처럼 크기를 강조한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어51) 광이 용량이 큰 술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사용된 것으로

<sup>49) 『</sup>大射禮儀軌』 啓辭秩 1743년 4월12일의 기록에 의하면 영조19년의 대사례에서 벌주 잔으로 觶 대신 脣을 쓰려고 했지만 祭享에 쓰는 脣을 대사례에 사용하는 것은 사체에 맞지 않으므로 沙鍾으로 대신하고 尊은 沙尊으로 대신하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왕실의례용 주기로서 脣과 觶 사이에도 기명적 위계의 차이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조선시대에 국가의례용 주기로 사용된 술잔 중 최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脣이었던 것이다. 앞의 각주29)과 [표2]참고.

<sup>50) 『</sup>燕山君日記』卷43 燕山君 8年 3月 2日(甲戌); 『正祖實錄』卷24 正祖 11年 9月 3日(丁卯).

<sup>51) 『</sup>世祖實錄』卷40 世祖 12年 12月 4日(辛丑); 『明宗實錄』 22, 明宗 卽位年 10月 29日(戊

생각된다. 또 조선시대 이전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 치와 달리 굉은 고려시 대에도 왕실의 주연에서 사용된 것이 기록에서 확인된다.52)

광도 중국에서 고대부터 사용된 술잔의 하나로 무소뿔[犀牛角]로 만든음주기였는데,53) 한영의 한시(韓詩)에도 "觥도 닷 되들이로 不敬을 벌하기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광이 닷되들이[五升]의 가장 큰 용량의 술잔으로불경함을 벌할 때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54) 또 『모시주소』에는 연향(饗燕)의 예에 시광(兕觥)을 두는 것은 취하여 실례한 자를 광(觥)으로 벌하기위함이라고 하여 광이 연음용 벌주잔으로 사용된 이유가 언급되어 있다.55)이러한 사실로 볼 때 광은 고대에 가장 큰 용량의 술잔으로 연향에서 실례(失禮)나 불경(不敬)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용된 벌주잔이었고, 그러한 성격과쓰임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굉은 "무소 뿔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기원한다(稱彼兕觥 萬壽無疆)" 는 《시경》의 내용에 근거하여<sup>56)</sup> 만수무강을 비는 축수(祝壽)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굉이 가진 축수의 의미가 부각되면서 시광(兕觥)이 현수용 술잔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sup>57)</sup>

午); 『正祖實錄』 卷11 正祖 5年 閏5月 6日(戊申).

<sup>52) 『</sup>高麗史』卷10 世家10 宣宗 6年 9月: 『高麗史』卷136 列傳49 禑王 12年 10月: 『宣和奉 使高麗圖經』卷26 燕禮 上節席斗 門餞: 『宣和奉使高麗圖經』卷26 燕禮 上節席.

<sup>53) 『</sup>說文解字』角部, "觵, 犀牛角可以飲者也".(扬之水, 「罚觥与劝盏」, 『收藏家』, 2007년 12기, 37쪽에서 재인용).

<sup>54)</sup> 앞의 주43).

<sup>55) 『</sup>毛詩註疏』卷一 周南關雎詁訓傳 卷耳,"饗燕之禮 有兕觥者 以饗燕之禮 立司正之後 旅酬無算 必有醉而失禮者 以觥罰之 亦所以爲樂也".

<sup>56) 『</sup>毛詩註疏』 卷 第一(一之二) 周南關雎詁訓傳 第一 卷耳.

<sup>57)</sup> 정조대 이후 고종대까지 獻壽와 관련된 왕실의 의례나 연향을 '稱觥之禮' 또는 '稱觥之節'로 지칭한 기록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稱觥'자체가 헌수나 축수를 상징적으로 의미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正祖實錄』卷40 正祖 18年 6月 10日(乙丑): 『純祖實錄』卷30 純祖 28年 2月 12日(壬午): 『高宗實錄』卷25 高宗 25年 1月 1日(癸丑): 『高宗實錄』卷31 高宗 31年 2月 7日(甲寅).

특히, 정조가 혜경궁 홍씨의 희갑연에 내탕고에 보관하던 무소뿔로 만든 서작(犀爵)을 시광(兕觥) 대신 사용하도록 한 것이<sup>58)</sup> 축수용 잔으로서 시광의 존재와 의미가 부각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sup>59)</sup>

결국 조선시대에 치와 굉은 모두 벌주잔으로 사용되었지만 기명적 성격이나 쓰임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60) 치는 뿔로 만든 잔으로 대사례에 사용된 벌주잔이었던 반면 굉은 뿔로 만든 잔에 국한되지 않고 커다란 술잔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면서 비공식적인 주연(酒宴)에서 연음용 벌주잔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굉이 함의한 축수(祝壽)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고, 무소뿔로 만든 서배가 시굉의 상징으로 대체되면서 왕실 연향에서 헌수(獻壽)용 술잔으로 사용되게 되었다.61)

<sup>58) 『</sup>園幸乙卯整理儀軌』 筵說 乙卯(1795) 2月 25日, "下內藏犀爵一副于整理所曰 詩云稱彼 兕觥萬壽無疆 此爵雖小卽內府舊藏 可以代兕觥設于壽酒亭也".

<sup>59)</sup> 구혜인은 왕실연향용 주기에 대한 연구에서 서배의 존재를 주목하여 무소뿔로 만든 서배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용도에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헌종대부터 고종대까 지 서작이 왕실연향에 사용되다가 『기사진표리진작의궤』를 기점으로 옥작이 서배를 대체하게 된 사실을 밝혔다. 또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사용된 서배를 효의 상징으로 왕의 헌잔이나 자궁의 술잔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았다.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연향 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의궤의 기용도(器用圖)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연구』40, 한국문화연구원, 2021, 158~161쪽.

<sup>60)</sup> 중국의 경우 고문헌에는 치와 광이 뿔로 만든 술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 치와 광은 뿔모양의 술잔이라는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北宋 徽宗연간에 수집된 商・周・漢・唐의 古器를 도해와 함께 수록한 <宣和博古圖>(1123 완성)에 그려진 치와 광은 뿔모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데,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치와 광을 이해하고 있다. 또 치와 광에 대한 연구가 상주청동기를 위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전유물 중 청동기 자체의 명문에서 치나 광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치와 광의 조형이나 기명적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록과 유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여치와 광의 조형을 중국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sup>61)</sup> 헌수·축수용 술잔으로서 굉의 실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별도 의 논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치'라는 술잔은 전례서의 도설을 통해 조선시대 군례의 활쏘기 의식에 사용된 뿔모양의 잔이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관련 문헌기록들과 회화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라는 뿔잔의 구체적인 쓰임과 기명적 성격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치라는 뿔잔은 왕실의 활쏘기 의식에 사용된 벌주잔, 즉 사의(射儀)용 벌작(罰爵)으로 고대 중국에서 작과 함께 귀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주기였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뿔잔 치와 받침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은 고대 중국의 활쏘기 의례에 연원을 둔 것이었고, 조선 초 『주례(周禮)』에 근거한 오례의 정비과정에서 군례의 활쏘기 의식에 사용되는 왕실의례기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영조대에 시행된 대사례와 관련된 『대사례의궤』의 기록과 대사례를 시각 화한 회화자료들을 통해 치는 뿔로 만든 뿔모양의 술잔으로 실제의 벌주의식 에서는 소뿔로 만들어 흑칠을 하고 나무로 만들어 주칠을 한 받침 풍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뿔잔 치는 벌주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점을, 벌주의식의 과정에서는 풍을 받침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 벌주잔으로 사용되었던 또 다른 술잔 굉은 치와 함께 고대 중국에 서부터 뿔로 만든 벌주잔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려와 조선에서 는 커다란 술잔이라는 특징이 강조되면서 주로 연음(宴飮)용 벌주잔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가 되면 굉은 축수의 상징을 내포 한 헌수용 술잔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게 되었다.

뿔잔 치는 대사례로 대표되는 사례의식에 사용된 특별한 왕실의례기였음에도 전하는 유물이 너무 희소한 탓에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뿔잔 치는 유교 국가를 지향한 조선의 왕실의례가 근간으로 삼은 고례(古禮)가 의례의 소용 기명인 의례기의 쓰임과 성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로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園幸乙卯整理儀軌』(奎14518)

『大射禮儀軌』(奎14941)

徐 兢、『宣和奉使高麗圖經』

徐居正,『四佳集』

丁若鏞,『茶山詩文集』

趙 翼、『浦渚集』

『論語註疏』(『(影印)文淵閣四庫全書』第195冊 經部189 四書類,臺灣商務印書館,1983)

『毛詩註疏』

『禮記』

『儀禮』

『周禮』

### 2 단행본

국립고궁박물관, 『군사의례-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2000.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 대사례와 향사례-한국무예사료 총서XVI-』, 2009. 문화재청, 『조선 영조대 대사례의 고증자료집』, 2006. 박례경·이원택 역주, 『의례역주』 2 향음주례·향사례, 세창출판사, 2013. 박례경·이원택 역주, 『의례역주』 3 연례·대사의, 세창출판사, 2013.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2000.

-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권91-92) 향례지1 : 향촌의례백 과사전』, 풍석문화재단, 2021.
-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출판사, 2019.

### 3. 논문

- 강신엽, 「조선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운영-『대사례의궤』를 중심으로」, 『조선 시대사학보』 16, 조선시대사학회, 2001.
- 구혜인, 「조선후기 왕실 연향용 주기(酒器)의 종류와 운용체계-의궤의 기용도(器 用圖)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 40, 한국문화연구원, 2021.
- 김문식,「1807년 경상감사 尹光顔의 鄕飮酒禮」,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 사학회, 2018.
- 김문식, 「계해년(1743) 대사례의 의식과 절차」, 『조선 영조대 대사례의 고증자료 집』, 2006.
- 육수화, 「조선시대 사대부 투호례의 변화양상과 그 예교적 함의」, 『한국교육사학』, 2020.
- 윤효정, 「조선전기 관요백자의 기명체계와 성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20.
- 신병주,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대사례의궤』」, 『한국학보』28권1호, 일지사, 2002,
- 이성곤, 「활쏘기 의례의 모범」, 『조선시대 대사례와 향사례-한국무예사료 총서 XVI-』,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이왕무, 「조선왕실의 상무, 군례」, 『군사의례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국립고 궁박물관, 2000.
-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2014. 정지수, 「영조대 대사례도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정지수, 「영조대 《대사례도권(大射禮圖卷)》 연구」, 『미술문화연구』 18, 동서 미술문화학회, 2020.

扬之水,「罚觥与劝益」,『收藏家』, 2007(12).

USAGE AND CHARACTERISTICS OF HORN CUP *CHI* (觶) FOR THE NATIONAL ARCHERY CEREMONY[大射禮] IN THE JOSEON DYNASTY

# Yoon Hyojeong (Yoon, Hyo Jeong)

Chi (觶, zhi in chinese) is a horn cup made of animal horns or shaped like horns. According to Sagidoseol (射器圖說, illustration of Royal Archery Vessels) in the 'Five Rites'(五禮儀) of the Sejongsillok (世宗實錄, annals of King Sejong) and the Gukjooryeeuiseorye (國朝五禮儀序例, Five Rites of the State), a horn cup named chi was used with a stand pung (豊) at the penalty ceremony of daesarye (大射禮, National archery ceremony).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origin and reason why a horn cup used at a formal archery ceremony,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ctual execution of archery ceremony with chi and stand pung.

The research revealed that horn cup *chi* and stand *pung* were used at *daesary*, *hyangsarye* (鄉射禮, Local archery festival), and *tuhorye* (投臺禮, Pitch-pot game tuho ceremony), and the usage of *chi* with pung was originated from the ancient Chinese archery rituals. In ancient China, chi could contain three quarts in the horn shape, which was allowed only to high-ranked people as *jak* [爵: *jue* in Chinese] (a type of ancient Chinese vessel) was. Moreover, the research studied *chi* and *goeng* (觥, rhinoceros's horn cup) were used on drinking penalty occasions. It was revealed that

chi was mostly used as a penalty cup (罰酒盞) in the archery ceremony, but *goeng* was used at a banquet as a penalty cup for a big size during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Daesaryeuigwe* [大射禮儀軌], a record of a formal archery ceremony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英祖), *chi* is made of a cow horn and painted with black lacquer, and *pung* was made of a wood and painted with red lacquer. Further, *jeom* [坫, saucer of *jak*] was used as a saucer for *chi* before the penalty ritual, and stand *pung* was used with *chi* during the penalty ritual.

A horn cup *chi* is an important evidence of how *gorye*[古禮] were rooted and reflected in the Confucian dynasty of Joseon when establishing the usage and features of ceremonial vessels. This research found meaningful facts that *chi*, a penalty cup for an archery ceremony, had a strong bond with *gorye* and confirmed its actual usage at *daesarye*.

Key Words: Horn cup, *Cht*, ff, drinking horn), *Pung* (豐, stand), a penalty cup(罰酒盞), *Goeng*(觥, rhinoceros's horn cup), Desarye(大射體, National Artchery Ceremony)